



고흥군 공고 제2026 - 1411 호

더큰 고흥, 행복한 군민!!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도양읍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공사 관급자재(HDPE SHEET) 제조 구입
 나. 기초금액 : 134,178,000원(부가세포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구매내용 : HEPE SHEET(T=2.0mm) 8,132㎡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마.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투찰 전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고흥군 환경정책과 담당자\(서배이 ☎061-830-5811\)](#)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4. 10:00 ~ 2026. 8. 26. 10:00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6.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 다. 입찰서 제출확인: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합성고분자방수시트\(세부품명 번호 10자리 30151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합성고분자방수시트 3015189901)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pm 3\%$ 범위 내에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공고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쟁물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흥군 재무과 혹은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를 고흥군 재무과 혹은 G2B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아.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 사항

-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환경정책과(서배이☎061-830-5811)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고 흥 군 재 무 관

더큰 **고흥**, 행복한 **군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